



[등록번호] 20180460

[최초 등록일] 2018.05.15

[최종 등록일] 2024.05.16

포וני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원스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산단2길 62(신기동)

[본사 전화번호] 1661-3469

[본사 팩스번호] 031-363-390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지원팀 /1661-346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원스 에프앤비	포오니외 1개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산단2길 62(신기동)		
	법인설립등기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년 3월 29일	2013년 04월 01일	조 창 덕	1661-3469	031-363-3900
	법인등록번호	131411-0295181	사업자등록번호	134-87-0744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 창 덕 (사내이사)	(주)원스에프 앤비	포오니외 1개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산단2길 62(신기동)		
	2013.04.01~현재		조 창 덕	1661-3469	031-363-390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내역은 없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명칭	 포으니
상호	 포오니 00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상표(서비스표)	 포으니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935,348	2,081,376	853,972	2,110,020	92,569	35,872
2022년	2,906,863	2,025,630	881,233	2,001,993	86,112	27,261
2023년	2,570,457	1,672,888	897,569	1,731,616	105,070	16,336

2)당사의 최근 3년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 으니의수라간, 포으니 가맹사업의 합산 금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조창덕	사내이사	2013.04.01~현재	대표	업무 총괄
가맹사업비 관련임원	해당 없음				

7.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원스에프앤비	가맹사업경영	2013.01~현재	으니의 수라간(등록번호:20130100140)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서비스표)	권리내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소유자	등록만료일
	간판 상품	4103739640000 (2016.10.7.)	4120160007928 (2016.2.19.)	조창덕	2026.10.7. (2026.10.7)

당사는 상표를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확보하여 가맹사업에 사용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포오니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7년 3월입니다.

2.[포오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원스에프앤 비	포오니	조창덕	2017. 03~2020.11.16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 포 공 원 1 로 64,307
(주)원스에프앤 비	포오니	조창덕	2020.11.17~현재	경상북도 문경시 신 기산단2길 62(신기 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포오니] 업종

영업 표지	업 종	
포오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국식	쌀국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포오니]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0	0		0	0		0	0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포으니]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	0	0	1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포오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포오니] 가맹사업외에 당사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직영점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원스에 프앤비	으니의 수라간	20130100 140	11/0	6/0	6/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포으니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 연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이 1개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평균 매출액	3.3㎡ 당 매출액	상한 매출액	3.3㎡ 당 매출액(상)	하한 매출액	3.3㎡ 당 매출액(하)	
전체	0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해당사항 없습니다.(가맹점 없음)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개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포오니의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한 광고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	-	-	-	-
판촉	-		-	-	-	-
합계	-	-	-	-	-	-

(위 광고비는 으니의 수라간 브랜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정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을지로 지정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1588-2588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포으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최초 가맹금

귀하(신규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000			
가맹비	5,5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영업 양수인)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00			
교육비	2,200,000	가맹점 영업 이후 반환 안 됨	교육 실시 이후 반환 되지 않음	

3). 보증금

귀하(영업양수인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4).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000
가맹비	5,500,000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5). 귀하가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단위:원,부가세포함)	3.3㎡당 금액 (단위:원)	지급기한
총계	-	50,000,000/감리비 별도	5,000,000	33㎡(10평) 기준
인테리어 설비	가맹본부	19,800,000(33㎡ 기준/10평)	1,980,000	오픈전 까지 완불
간판		3,300,000	-	
주방기기 및 출가구		가구: 4,900,000 주방기기:14,300,000	1,920,000	
원.부재료		2,200,000	-	
기타 개점에 필요한 물품		주방집기류:3,300,000 오픈 초도물품:2,200,000	-	
감리비	가맹본부	3.3㎡당 33만원	-	

[인테리어는 3.3㎡당 198만원(부가세포함)으로 산정되었으며 위 표의 금액은 당사에서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전 지급 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단위:원,부과세포함)	지급시기
예치가맹금(계약금)	7,700,000	계약 체결시
중도금	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잔금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포으니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다만 통행인의 수, 교통량 및 질,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8).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9).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역	지급대상자	금액(단위:원.VAT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개점 이후 교육비	정기교육	가맹본부	소요비용과 산출근거를 교육전 서면으로 통지함.교육 계획은 실시1개월전에 서면통지함.	개별 청구	교육 실시후 반환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소요비용과 산출근거를 교육전 서면으로 통지함. 교육계획은 1주일전에 서면 통지함.		
로열티	상표 사용료	가맹본부	매월 22만원 (매월 말일 청구/익월 15일에 입금)		소멸성 비용
광고분담비	전국 및 지역단위의 광고	가맹본부	전국규모의 광고 1.상품광고:본사50%부담/가맹점사업자 50%부담 (가맹점 총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 2.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본사70%부담/가맹점사업자 30%부담(가맹점 총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 3.지역광고:가맹본부 50%. 해당지역 가맹점 사업자 50%		광고활동 시작후 반환 안됨
판촉분담비		가맹본부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판촉시 판촉물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이며,제작비용(팝플렛, 전단지등)은 가맹본부가 부담함.그밖의 판촉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담하기로 함		판촉활동 시작후 반환 안됨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3,300,000원	간판 변경후 3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위생.재고관리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포를 점검하고 그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하여 교체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출상황과 회계원장등의 자료에 대하여 당사의 서면 보고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의 직원이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 준합니다.

4). 경업금지 기간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승낙없이 자신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포오니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정산서를 받은 익일부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1일 1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포으니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 A/S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순번	품목명(단위)	공급가격 상한	공급가격 하한	구분 (공급업체)
1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직전 사업연도 공급물품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경제적 이익의	비고
----	----	-------------	---------	----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내용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고기 쌀국수	지정된 메뉴외 상품을 판매할 시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1회 위반 : 구두 경구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위반 이상 :계약 해지	
닭고기 쌀국수			
매운 해물 쌀국수			
볶음 해물 쌀국수			
소고기 볶음밥			
닭고기 볶음밥			
해물 볶음밥			
짜조			
새우/고구마 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 자재를 제 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소고기 쌀국수	3,900
닭고기 쌀국수	3,900
매운 해물 쌀국수	3,900
볶음 해물 쌀국수	4,900
소고기 볶음밥	4,900
닭고기 볶음밥	4,900
해물 볶음밥	4,900

짜조	3,000
새우/고구마 롤	3,000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동일한 재료와 맛, 동일한 컨셉의 쌀국수 사업	포오니	해당없음

[특수상권(백화점,마트,슈퍼)은 예외로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500m(로드샵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의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지역 변경(안)작성->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지-> 가맹점사업자	동이가 있는 경우 15일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영업지역변경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완료	(신규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가맹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해당사항없음(가맹점 없음)	-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로드샵)은 [2]년으로 합니다.

단 특수상권의 가맹계약기간은 [1]년이며 갱신시에도 동일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7]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1항 (가맹계약의 갱신등)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제30조 1항의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 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을"이 제30조 2항의 "갑"의 품질 관리 기준을 2개월 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경우 3. "을"이 제30조 3항의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9조1항 (계약의 해지)

4. “을”이 제30조 5항의 “갑”과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5일이상 방치하는 경우
5. “을”이 제30조 5항의 “갑”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영지도의 결과 및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제30조 6항의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제 30조 7항의 노후화된 설비 일체에 대한 교체,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을”이 제 30조 8항의 종업원의 규정된 복장 착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9. “을”이 제 30조 9항의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10.“을”이 제 30조 10항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자재의 품질 및 범위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일부 및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1.“을”이 제 30조 11항의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갑”이 정한 상품의 가격 및 메뉴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2.“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 24조 1항의 “양도”의 행위를 하는 경우
- 13.“을”의 귀책사유로 제 12조 내지 15조의 이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채무 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문의: 관리팀

준수할 것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영업 양수인은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 준합니다. 단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영업 양수인의 경우 가맹금 중에서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 사실 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	영업상속인에 대하여가맹비만 면제함(교육비부담함)
대리행사 및 위탁	본사에 서면으로 통지->본부의 동의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예정일로부터 일주일전에 서면으로 통지	당사의 교육이수 및 교육비 부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포오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동일한 재료와 맛, 동일한 컨셉의 쌀국수 사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기본 12시간으로 하되 가맹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조절함	월 26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18세 미만의 종업원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월 1회 이상	가맹점관리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가맹점관리팀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점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함

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사업자부담	비고
광고 (전국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지역단위 광고는 본사 50%부담/ 해당지역 가맹점 사업자 50%부담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30% 중 가맹점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행사		팸플렛,전단,리플 렛,카드로그의 기획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 하는 경품 및 기념품의 제 작비용과 팸플렛, 전단,리 플렛,카드로그등의 제작비 용	판촉 행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제반 판촉활동을 계획할 경우에 반드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34조의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일금30,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금 7,700,000원(부가세포함) + 가맹사업 개시비용 50,000,000원(부가세포함)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4페이지~15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점포계약	-점포 입지 선정 -점포 개발 착수 -상권 분석	3~4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4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15일~20일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7~8일	
교육	-교육 -아르바이트 교육, 점주 교육	5일	
점포 개업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분쟁	
제 42 조 [분쟁해결 및 재판의 관할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가맹본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잡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행사시 지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일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	--	---	--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자금지원은 본인 신용으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개점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점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소요시간	장소
사전 교육	1일차:위생 및 손님응대교육 2일차:조리교육 3일차:조리교육 4일차:조리교육 5일차:청소,정돈교육	25시간 (5일 * 5시간)	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절차 및 방법
정기교육	실시 1개월전에 교육계획, 시간,장소,비용을 서면으로 통지함
특별교육	실시 1주일전에 시간,장소,비용을 서면으로 통지함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부가세포함	비고
사전 교육	25시간	2,2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특별 교육	매년 교육계획을 사전에 통지함	실비수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제 16 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육 훈련은“을”이 직접 받아야 하며 “을”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을”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제16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